

 국토교통부		보도자료	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
		배포일시	2018. 8. 23.(목) / 총2매(본문2)	
담당 부서	교통안전복지과	담당자	·과장 박정수, 사무관 권성근 ·☎ (044)201-3867	
보도일시		2018년 8월 24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 · 방송 · 인터넷은 8. 23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자동차 20대 넘는 운수업체 안전인력 배치 의무화...연말부터 적용 27일부터 「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 개정안 입법예고...안전관리 강화 기대

- 앞으로, 일정규모 이상 운수업체 및 도로 운영법인에는 자체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안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교통안전담당자*를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등을 규정하기 위해 「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7일(월)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.
 - * 운수업체, 도로 운영법인 등에서 교통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
- 금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은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, 법령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「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대상 · 자격범위 등 규정

- 한국도로공사, 유료도로 운영법인 등 교통시설설치 · 관리자와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수업체*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한다.

*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,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,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

- **교통안전담당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교통안전관리자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교통사고 분석과 관련된 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자격* 보유자로 한다**

*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에 따른 교통사고분석사, 운수교통안전진단사

② 교통안전담당자 교육방법 및 교육 위탁기관 등 규정

- 교통안전담당자는 신규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, 이후에는 2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.
-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.

③ 교통안전담당자 미지정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

-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,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교통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운수업체 등의 교통안전 관리 역량이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☐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월27일부터 10월5일까지(40일간)로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 “정보마당/법령정보/입법예고”에서 볼 수 있으며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, 팩스,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.

* 의견제출처: (우)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,
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
- 전화번호: 044-201-3868, 팩스 : 044-201-5586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권성근 사무관(☎ 044-201-386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